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등 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0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	12
○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4일

발 의 자 : 이형덕·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제창록 의원

1. 제안이유

- 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
- 현재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기존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안 제28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7. 5. ~ 2019. 7. 10.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10분”을 “5분”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덕수 (2680-25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u>10분 자유발언</u>)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회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10분</u>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의2(<u>5분 자유발언</u>) ----- ----- ----- ----- ----- ----- - <u>5분</u> ----- ---.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발언통지서		발언통지서	
회의명 : 제 회(정례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20 . . .)		회의명 : 제 회(정례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20 . . .)	
발언의원	(서 명)	발언의원	(서 명)
발언종류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질의, 토론, 보충발언, <u>10분 자유발언</u> , 정견발언, 기타	발언종류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질의, 토론, 보충발언, <u>5분 자유발언</u> , 정견발언, 기타
【발언요지】		【발언요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5일

발 의 자 : 한주원 · 김운호
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시장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사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1조의 2) 신설
 -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 준수와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금지
 - 시설·장비·비용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
 -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탁기관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7. . ~ 2019. 7.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이 85% 이상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u><신 설></u>	<u>제11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 <u>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u> <u>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u> <u>⑥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이 85% 이상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 <u>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관 계 법 령 발 체 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 (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4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7. 5. ~ 2019. 7. 10.

5.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모자보건법」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신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보건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제창록 (2680-2508)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5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김윤희
·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시설 장기 운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보육의 질 향상
- 영유아 보호자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하고 안정적 보육실현에 기여
- 법제전문기관의 권고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 도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분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7조 등)
-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안 제7조의2)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실현을 위한 광명시 영유아보호자 역량 강화교육(안 제17조의2, 안 제17조의3)
-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의 동일 시설 운영을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운영(안 제24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등)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7. 5. ~ 2019. 7. 1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시”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센터”를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단서 중 “의하여 위탁받은 자”을 “따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한다.”를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임면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비용”으로, “일부를”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업무수행능력”을 “업무수행 능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탁”을 “센터를 위탁”으로,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 및”을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및 그 자녀: 50퍼센트

제16조 중 “실시하는데”를 “실시하도록”으로, “침해 받”을 “침해받”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도”를 “차별행위를 할 의도”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호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의3(교육내용) 제17조의2에 따른 영유아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6. 그 밖에 보호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이라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탁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을 “단체 또는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탁·운영하는”을 “위탁 운영하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자(이하 “위탁 받은 자”라 한다)”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이하 위탁 운영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이”를 “법인을”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자”를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위탁 운영자의 동일 시설 운영을 2회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4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 해산된다.
- ⑧ 위탁 운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시설을 운영

하여야 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따라 위탁 운영자”로,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위탁받은 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위탁받은 자”를 각각 “위탁 운영자”로, 같은 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을”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탁받은 자”를 각각 “위탁 운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받은 자와”를 “위탁 운영자와”로,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위탁받은 자에게”를 “위탁 운영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도·감독할”을 “지도·감독할”로,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30조 중 “위탁받은 자가”를 “위탁 운영자가”로, “전 위탁받은 자”를 “중전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31조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 운영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보육사업”을 “시장은 보육사업”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7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육정책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호의 구성 비율에 적합하도록 <u>시장</u>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u>광명시</u> <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 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 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국공립어 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 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10조의 2에 따른다.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업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담당 과장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

-----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

-----.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

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
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
하는 경우에는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
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한다.

④ (생략)

제13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

② 센터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지방일반임기제공
무원 나급부터 라급을 적용하되, 센
터장의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정하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
무원 8급 상당으로 한다.

제14조(이용료) ① (생략)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의

-----.
----- 따라 위탁 운영자-----

-----.

제11조(센터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
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를 위탁 받은자가 임면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의 재정) ① -----
----- 비용-----
-----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

② ----- 「지방공무원 보
수규정」-----

----- 업무수행 능력 -----

-----.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를 위탁 -----
----- 징수할

승인을 받아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5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
다.

1. ~ 3. (생 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가족: 전액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및 자녀: 전액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등록 장애인 및 자녀 : 50퍼센트

7. ~ 9. (생 략)

제16조(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의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
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차별금지) ①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따라 -----

5. ----- 장애 정
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및 그 ----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및 그 자녀: 50퍼센트

7. ~ 9. (현행과 같음)

제16조(학대 및 체벌 금지) -----

----- 실시하도록 --

----- 침해받-----
-----.

제17조(차별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거나,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생략)
② 시장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

② -----

차별행위를 할 의도-----
-----.

제17조의2(보호자 교육) ① 시장은 법제9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역량강화 교육은 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의3(교육내용) 제17조의2에 따른 영유아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6. 그 밖에 보호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생략)
② -----

제 요청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를 따른다.

제24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이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자로 지정할 수 없다.

----- 관계 기관-----

-----.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
----- 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4조(위탁 운영) ① -----
----- 단체
또는 법에 따른 -----

-----.
위탁 운영하는 -----

-----.

② -----

-----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이하 “위탁 운영자”라 한다)-----
-----.

③ ----- 법인을 -----
-----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
-----.

④ 제1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받은 자를 선정한다.

⑤ 시설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시장은 위탁 운영자의 동일 시설 운영을 2회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 해산된다.

⑧ 위탁 운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

제2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 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날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위탁받은 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 ① ---- 위탁 운영 자-----

-----.

② -----

----- 따라 위탁 운영자-----
----- 위탁 운영자-----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위탁 운영자-----

----- 관계 법령 -----

-----.

② 위탁 운영자-----

-----.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 줌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

⑦ (생략)

제2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③ 위탁 운영자-----

-----.

④ 위탁 운영자-----

-----.

⑤ 위탁 운영자-----
----- 관계 법령-----
-----.

⑥ 위탁 운영자-----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위탁의 취소) ① -----

-----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

1. 위탁 운영자-----

2. 위탁받은 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이 취소된 위탁받은 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받은 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위탁받은 자가 된 자는 전 위탁받은 자가 고용했던 시립

2. 위탁 운영자-----

--

3. 시행-----

4. (현행과 같음)

② -----
- 위탁 운영자와 -----

위탁 운영자-----.

③ 시장은 제1항-----
----- 위탁 운영자에게 -----
----- . ---- 위탁 운영자-----
----- .

제29조(지도·감독) ① -----

----- 위탁 운영자-----.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고용승계) -----
----- 위탁 운영자가 -----
중전 위탁 운영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
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
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
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
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이
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4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
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
3조에 따라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② (생략)

제35조(보육계획) 시장은 보육사업의

-----.

제31조(손해배상) 위탁 운영자-----

-----.

제32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

-----.
----- 위탁 운영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어린이집연합회) ① 시장은 보
육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보육계획)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영유아보육법</u>」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u>따라</u> ----- -----.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준용) ----- ----- <u>법</u> ----- -----.
---	---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5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민의 여가 증진 확대 및 수요 충족에 관한 이용사항을 규정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 정책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여가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관한 시설 사용료 기준사항을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7. 5. ~ 2019. 7. 10.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캠핑장 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토캠핑(테크)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1면 기준
전기사용료	1개소/1회당	3,000	1박 기준
비 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		

※ 전기사용료는 비감면 대상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나. 퇴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 2)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 3)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입안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1.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table><tr><th>시설별</th><th>사용기준</th><th>사용료</th><th>비 고</th></tr><tr><td>오토캠핑(데크) 사이트</td><td>1개소/1대당</td><td>30,000</td><td>1면 기준</td></tr><tr><td>전기사용료</td><td>1개소/1회당</td><td>3,000</td><td>1박 기준</td></tr></table> ※ 전기사용료는 비감면 대상임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토캠핑(데크)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1면 기준	전기사용료	1개소/1회당	3,000	1박 기준	〔별표 1〕 1.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table><tr><th>시설별</th><th>사용기준</th><th>사용료</th><th>비 고</th></tr><tr><td>오토캠핑(데크) 사이트</td><td>1개소/1대당</td><td>30,000</td><td>1면 기준</td></tr><tr><td>전기사용료</td><td>1개소/1회당</td><td>3,000</td><td>1박 기준</td></tr><tr><td>비 고</td><td colspan="3">○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td></tr></table> ※ 전기사용료는 비감면 대상임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토캠핑(데크)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1면 기준	전기사용료	1개소/1회당	3,000	1박 기준	비 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토캠핑(데크)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1면 기준																										
전기사용료	1개소/1회당	3,000	1박 기준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토캠핑(데크)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1면 기준																										
전기사용료	1개소/1회당	3,000	1박 기준																										
비 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 까지로 한다. 나.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3)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2. (현행과 같음)																												